이천시 기획조정 통제규정

소관부서: 기획예산담당관

제정 1996 · 3 · 1 훈령 제 1호 개정 1999 · 2 · 26 훈령 제 92호 개정 2007 · 7 · 2 훈령 제177호 개정 2008 · 8 · 1 훈령 제181호 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 일부개정 2019 · 1 · 1 훈령 제274호 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시정의 합리적인 기획운영과 담당관·과·소간 업무조정 및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99·2·26, 2007·7·2〉
- **제2조(합의사항)** ①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. 〈개정 99·2·26, 2008·8·1, 2019·1·1〉
- 제3조(착안사항) 합의사항에 관하여 합의자가 착안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관계 담당관·과·소장 협조의 필요성 여부 〈개정 99·2·26, 2007·7·2〉
 - 2. 운영계획 및 각종종합계획과의 관련성
 - 3. 법적 타당성 여부
 - 4. 기타 시정전반에 걸친 종합, 기획조정, 통제의 필요성 여부
- **제4조(심사사항)** 각 담당관·과·소에 성안하는 다음 각호의 문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, 조례, 규칙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심사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개정 99·2·26, 2007·7·2, 2008·8·1, 2019·1·1〉
 - 1. 시자치법규, 훈령, 예규, 고시 공고 등에 관한 문서
 - 2. 각종 인허가 등의 취소, 정지처분이나 이에 따른 지시에 관한 문서
 - 3. 소송, 소원, 청원, 이의신청과 관련있는 문서
 - 4. 행정상 손해배상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문서

이천시 기획조정 통제규정

- 5. 기타 법령해석 질의응답이나 법적용상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문서
- 6. 행정상 대집행에 관한 문서
- 7.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문서
- 제5조(착안사항) 심사사항에 관하여 심사관이 착안하여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법 적용의 공정성 여부
 - 2. 법률상 사건절차의 이행여부
 - 3. 재량권의 이탈여부
 - 4. 기타 형식 절차상의 흠의 존재여부
- **제6조(합의 및 심사요구)**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합의 또는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소속 담당관·과·소장의 결재를 얻은 다음 행한다. 〈개정 99·2·26, 2007·7·2, 2008·8·1, 2019·1·1〉
- 제7조(합의 및 심사절차) ① 합의 또는 심사자가 의견이 있으면 합의 및 심사전에 부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·과·소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. 〈개정 99·2·26, 2007·7·2, 2008·8·1, 2019·1·1〉
 -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그 내용에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·과·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은 수정 또는 변경할수 있다. 〈개정 99·2·26, 2007·7·2, 2008·8·1, 2019·1·1〉
 -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인·허가 처분 등의 서류심사시 필요적 사항이 아닌 경미한 홈 결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보정조건 또는 주무과장과의 공동확인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〈개정 99·2·26, 2007·7·2, 2008·8·1, 2019·1·1〉
- 제8조(표시 및 기록보존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는 기안문서 협조란에 합의자 가 서명함으로써 표시한다.
 -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기안문서 및 성안문서의 우측상단에 심사필인(별지제1호서식)을 날인하고 주요문서 심사대장(별지 제2호서식)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

(추 2) - 234 -

제9조(통제) 문서통제관은 필요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거나 심사필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주관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1999 · 2 · 26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07 · 7 · 2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〈2008·8·1 훈령 제181호, 이천시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생략

② 이천시 기획조정 통제규정 |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기획감사실장"을 "기획감사담당관"으로, 제4조 중 "혁신정책담당관"을 "기획감사담당관"으로 하고, 제6조 중 "기획감사실장"을 "기획감사담당관"으로 하며, 제7조제2항내지 제4항 중 "혁신정책담당관"을 "기획감사담당관"으로 한다.

③부터 ①까지 생략

부칙〈2019·1·1 훈령 제274호,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생략

- ②「이천시 기획조정 통제규정」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"기획감사담당관"을 "기획예산담당관"으로 하고, 별지 제1호서식 중 "혁신정책담당관"을 "기획예산담당관"으로 한다.
- ③ 내지 ① 생략

이천시 기획조정 통제규정

[별표]

합 의 사 항

- 1. 농촌개발사업
- 2.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의 종합계획
- 3. 주산단지 및 부업단지 조성계획
- 4. 농업생산의 종합계획
- 5. 사회복지의 종합계획
- 6. 폐기물관리행정의 종합계획
- 7. 재해구조 사업
- 8. 공업단지 조성계획
- 9. 물가대책
- 10. 양곡연료 수급계획
- 11. 수출진흥계획 및 실적
- 12. 국토개발계획
- 13. 고속도로주변 개발계획
- 14. 시 건설종합계획
- 15. 도로건설, 유지관리 정비계획
- 16. 풍수해 대책계획
- 17. 도시개발계획
- 18. 관광개발계획

- 19. 시의 각종대회 및 유관기관장 회의
- 20. 시 본청 및 읍 · 면 · 동 사무개선
- 21. 시 읍 · 면 · 동 직제와 사무관리
- 22. 읍 면 동 행정실적 감사
- 23. 각종 방역계획 및 전염병 대책
- 24. 기타 실·과·소간 협의조정을 필요 로 하는 사항

(추 2)

[별지 제1호서식] 〈개정 2019・1・1〉

심	기획예산뒤	남당관	0 0	0	(인)
사 필	년	월	일	제	형

[별지 제2호서식] 〈개정 99·2·26〉

주 요 문 서 심 사 대 장

심 사 실 장	일련번호	심사년월일	건 명	소	관	심사조정 및 기타사항